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61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학영·윤건영·김영배

김교흥 • 윤호중 • 한정애

안호영 · 김기표 · 이인영

강득구 · 김성환 · 김영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 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제8항 신 설 및 제11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에게 제5항에 따라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 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7항·제8항 및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신고자등이 특정범죄에 관하여 범죄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
	서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
	6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
	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
	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에게 제5
	<u>항에 따라 인적 사항의 전부</u>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u>⑦</u> ・ <u>⑧</u> (생 략)	<u>⑨</u> ・ <u>⑩</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
례 등) ① ~ ⑥ (생 략)	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을 증인으로 소환하
	는 경우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u>야 한다.</u>

<u>⑦</u>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